

문서관리번호	최초 제정 (제1판)
최종 수정일	2024. 06.
문서 관리자	글로벌협력팀

[현대건설] 공급망 ESG 관리 정책

2024.06

[담당자]

[현대건설] 글로벌협력팀

김재기 (서명)

[승인자]

[현대건설] 구매기획실

박채영 (서명)

[담당자]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팀

김세원 (서명)

[승인자]

[현대건설] IR 담당

문제철 (서명)

1. 배경 및 목적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가지의 바탕을 이루는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방식이다. 최근 공급망의 인권현황, 지배구조, 환경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EU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 부과 규제 도입으로 공급망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화되는 ESG 경영 요구에 발맞추어 현대건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당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제정하고, 정책에 따라 당사 공급망 지속가능성 제고 및 개선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본 정책은 각국의 법령/규제, 책임감 있는 건설 이니셔티브(Building Responsibly Initiative),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K-ESG 가이드라인,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공급망 내에서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2. 공급망 ESG 경영 책임 및 평가 범위

2.1. 공급망 ESG 경영 책임 및 관리

EU 공급망 실사법이 EU 이사회 승인을 받아 채택됨에 따라 경영활동의 전 가치 사슬에 이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잠재적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대건설은 본 정책 이행을 위한 담당 조직을 두고, 관련 조직은 공급망 관리 정책 및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든 공급망 내 협력사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며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ESG 경영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본 정책과 '현대건설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라 협력사의 리스크에 대해 평가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한 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2.2. 정책의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공급망 전반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공급업체, 협력업체 등)에게 적용된다.

2.3. 공급망 ESG 평가 범위

현대건설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한 공급망(협력사) ESG 평가를 실시한다. 현대건설 공급망 ESG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3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정책과 '현대건설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라 수행한다.

1) 환경 (Environment)

환경조직 보유, 환경관리 담당자 지정, 환경전략 수립, 환경교육 실시 등의 환경전략 부문과 환경경영시스템, 환경 특허, 친환경 자재 구입 등의 환경경영 부문, 환경오염물질 인허가,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등의 환경성과 · 관리 부문으로 나누어 환경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

2) 사회 (Social)

정규직 비율, 취업규칙 보유 등의 고용 부문과 장애인 고용, 노사협의회 보유 등의 사회 부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품질 특허 보유 등의 고객 부문, 안전보건 경영체계, 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 투자 · 성과 등의 안전 부문을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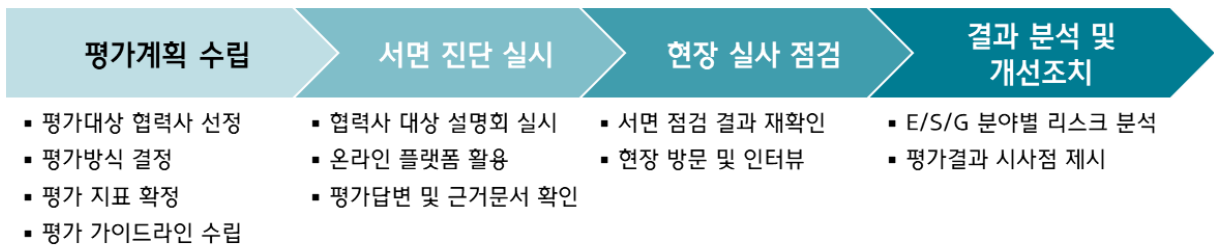
3) 지배구조 (Governance)

최대주주 변경 이력, 채무불이행 유무 등의 경영안정성 부문, 특수관계사 매출 · 매입 거래 등의 회계투명성 부문, 윤리경영제도 보유, 윤리경영교육 시행 등의 윤리경영 부문, ESG 운영조직 보유, ESG 정보 공개 여부, 이사회 운영 · 구성 등의 ESG경영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사항을 다루고 있다.

3. 공급망 ESG 경영 평가 절차

현대건설은 공급망과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식별 및 개선하기 위해 연 단위의 협력사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수행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별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거래실적, 전략적 중요도, ESG 리스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협력사를 선정하고 서면진단을 실시한다. 도출된 서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별 ESG 영역별 관리 및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며, 고위험 협력사를 식별하여 현장실사 평가를 수행한다. 현장실사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부적인 개선과제를 수립한다. 개선이 필요한 주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사가 적절하고 유용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여 부정적 영향이 감소되었는지 모니터링한다. 협력사가 개선조치를 통해 부정적 영향의 완화 및 해소하지 않을 경우 거래 관계에 (거래 중단 및 종료 등)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실사와 관련된 정책, 절차, 행위들에 관한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유하고 소통한다.



4. 공급망 ESG 경영 평가 지표

4.1. 평가 지표

현대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현대건설 협력사 행동규범' 등에 의거하여 국내 법·제도 및 국제 규범을 준용하는 평가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1) 환경 2) 사회 3) 지배구조로 나뉘어져 있으며, 평가는 협력사의 산업군별 리스크, 협력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별 리스크 등 외부적인 위험 요소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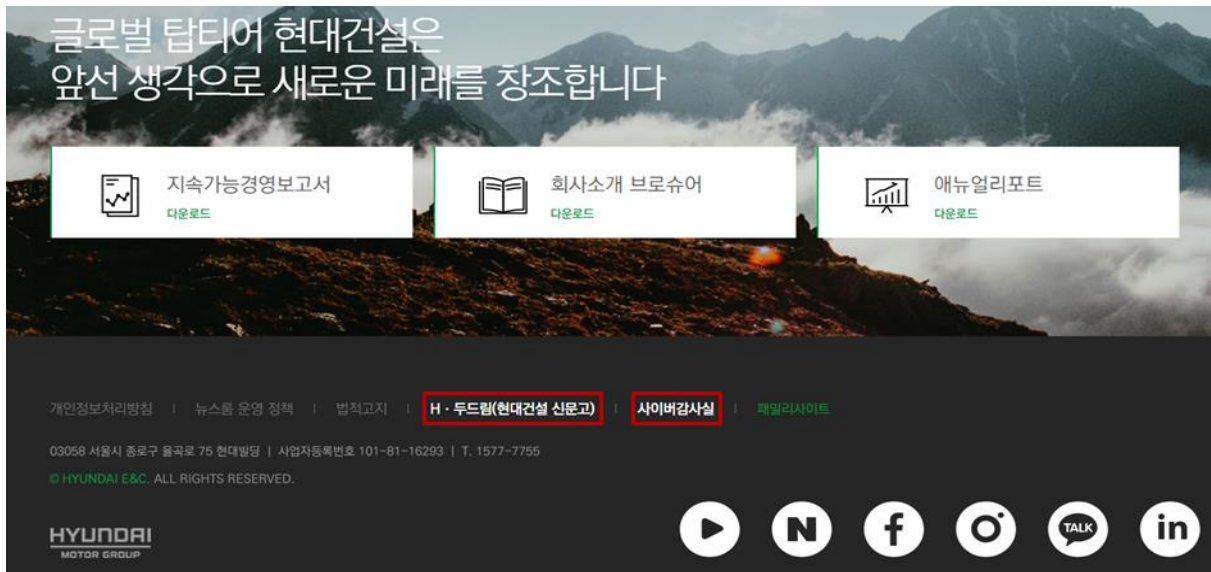


5. 공급망 ESG 경영 장려 정책

현대건설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ESG 경영을 장려하고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매년 협력사 갱신평가시 ESG 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신규 협력사의 기본거래계약 체결시 협력사 행동규범을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협력사의 ESG 경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6. 고충처리 제도

현대건설은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 ESG 분야의 법률 및 규정, 본 정책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이해관계자는 사이버 감사실과 H-두드림 홈페이지(<https://www.hdec.kr>) 내 소통 채널을 통해 부당행위를 비롯한 ESG 관련된 사안을 제보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보장하고 신변을 보장하고, 신고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7. 관련 정책

현대건설은 별도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전 사업영역에 걸친 가치사슬(Value Chain)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의 모든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 관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대건설의 '인권헌장',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환경경영 정책',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산림파괴 예방 정책', '부패방지법 준수규정', 'D&I 정책' 등 ESG 경영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 체계 구축을 이행하고 있다.

8. 부칙

본 정책은 2024.6.30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